문화재 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 국제전문가회의

2002. 9. 30-10.3, 서울

권 고 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이 공동 주최하고 유네스코가 후원하여 2002 년 9 월 30 일부터 10 월 3 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문화재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전문가회의의 참석자들은

무력분쟁, 점령, 식민지배의 결과로 반출된 문화재들의 반환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논의하였으며

불법적으로 혹은 형사상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불법 거래 문제와 그 예방 그리고 문화재가 발견된 후에 이를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였으며,

무력분쟁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 (1954) 및 두 개의 부속의정서 (1954,1999),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1970),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UNIDROIT 협약 (1995) 및 수중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협약 (2001)의 미가입국들에게는 협약에 가입할 것을 호소하고,

회원국 및 이 문제에 관련된 기관들, 특히 박물관이나 기록보관소의 전문가, 경찰 및 세관원, 비정부기구들(NGOs)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1. 불법적으로 유출되었거나 무력분쟁, 점령, 식민지배의 결과로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양자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그러한 일을 진흥시킴에 있어서 현재 활동중에 있는 지역 협력망을 활용하도록 한다;

2. 일반 대중 및 정책결정자, 법집행관,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문화재보호의 중요성, 특히 불법 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3. 현행 국제법과 비교해 관련된 국내법의 적합성을 명확히 한다;

4. 국내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문화재에 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미발굴된 문화재의 경우, 국가 소유권을 명시하여 국외 재판관할권에서의 반환을 촉진하고 이를 도

난, 도굴 및 불법 반출시킨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기소를 지원한다;

5.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촉진케하고 아울러 문화재 역량 강화를 위해 전세계의 대표적인 문화재반환 사례에 관한 연구 사업을 개발한다;

6. 특정 문화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박물관 전문가들과 경찰 및 세관원을 위한 문화 유산의 법적 보호와 보완 조치에 관한 전문훈련과정을 개발한다;

7. 도난되거나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들의 소재 파악 및 반환에 필요한 모든 수단 – 문화재의 신분증명제도 (Object-ID) 및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인터넷의 활용 및 인터폴(INTERPOL),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국제예술연구재단(IFAR: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Art Research), 국제기록보관소협의회(IC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국제도서관협회(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es), 국제세관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등의 네트워크 – 을 사용할 것을 장려한다;

8. 문화재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경찰, 세관공무원, 유물 당국, 문화부, 법무부 등)의 대표로 구성된 국가 내 전담 부서(unit) 혹은 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재 불법거래의 근절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이 국내 부서 혹은 위원회의 연락처를 유네스코에 통보해 국가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

9. 특정 문화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소유국은 문화재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재 원산국의 일반 대중, 혹은 최소한 연구자들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10. 특정 문화재의 반환이 다른 반환 문제에 선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 문제에 관한 적정한 해결책을 마련한다;

11. 당사국 간에 실효성있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원산국으로의 적정한 반환을 위해 아래에서 열거되는 사항들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택한다.

    a. 문화유산 전문가간 협상을 개시한다;
    b. 협상에 임할 때, 해당 문화재의 개별성과 특정가치의 모색 등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입장들을 강조한다;

c. 문화재반환에 관련된 문제점을 균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미디어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양시킨다;
d. 화해, 객관적인 제 3 자를 통한 중재를 유도한다.
e. 법적 분쟁의 경우, 적합한 법률자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재재판을 의뢰하거나 여타의 협상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제소한다;
f. 양자 협상이 실패한 경우, 이 사안은 '원산국으로의 불법 유출된 문화재반환의 촉진을 위한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한다;
g. 모든 협상 과정에 있어서, 영구 혹은 연장이 가능한 장기 대여, 영구 임차, 및 전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재의 소유권에 관한 명백한 결정이 없더라도 원산국에 물건을 양도하는 대안을 고려한다.

이번 회의에서 심도깊게 논의된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원산국의 기원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하도록 촉구한 국제박물관협회(ICOM) 전문가회의(1978 년 세네갈 다카)에서 채택된 원칙을 상기하면서 1993 년과 2000 년에 정치적 차원에서 한-불 양국 정상들이 보여주었던 협력 의지에 비추어,

우리는 한-불 양국 정부가 국제협력, 정의 및 열린 토론의 기조 하에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포함하는 우호적이고도 적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한다.